

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박기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37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

발 의 자 : 박기재, 안광석, 김춘례, 이영실,
전석기, 김달호, 오한아, 김태호,
정지권, 김경영, 김광수, 김호진
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7201호, 2020. 4. 7. 일부개정)과 그 밖의 인용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과 제명 띄어쓰기를 정비하고, 입안기준에 따라 약칭의 위치를 옮겨 규정하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한 조례가 되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인용조문과 인용법률 제명 띄어쓰기를 정비함.(안 제1조,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제5호)
- 나. ‘지표개발’을 ‘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’로 수정하여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라는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함.(안 제2조제1호)
- 다. ‘서울특별시장’의 약칭(시장)을 옮겨 규정함.(안 제3조제1항)
- 라. 제8조제5항 후단의 내용을 별도의 항으로 나누어 규정함.(안 제8조 제6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제5항”을 “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제6항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지표개발”을 “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”을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시장”을 “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”을 “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”으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5항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1조 중 “업무수행 상”을 “업무수행상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</u>」 제40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능) 「<u>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0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·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p>1.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·시행 및 평가,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<u>지표개발</u>,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</p> <p>2. 「<u>국민기초생활보장법</u>」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</p> <p>3. ~ 7. (생략)</p> <p>제3조(위원 구성 및 임기) ① 위원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</u>」 제40조제6항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기능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<u>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</u>----- -----</p> <p>2. 「<u>국민기초생활 보장법</u>」 --- ----- -----</p> <p>3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위원 구성 및 임기) ① -----</p>

⑤ 소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에 관하여는 제7조와 제9조를 준용한다. 그밖에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<신 설>

제11조(공청회 등 개최) 위원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·연구를 의뢰하거나, 공청회·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같음)

⑤ -----
-----.

<후단 삭제>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1조(공청회 등 개최) ----- 업
무수행상 -----

-----.